

## 2024년 통계청 일반임기제(행정6급:공인노무사)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통계청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10월 4일  
통 계 청 장

### 1 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행정주사 (일반임기제)	1명	2년	통계청 운영지원과(대전)

### 2 임용예정직무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노무 (공인노무사)	행정주사 (일반임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노사협력 및 근로자 인사노무관리 업무</li><li>단체협약 교섭, 근로자 관련 자체규정 및 노무 관리</li><li>상시 노사협력 업무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한 노무관련 교육자문 등(유권해석, 소송지원 등)</li></ul>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가능

###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 4 응시 자격

###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18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4.11.6.) 기준]

채용분야	자 격 요 건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노무	◇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경력,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경력 등 노무관련 업무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기업, 법무법인, 노무법인 등), 노무사무소(개인사업체),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함)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

※ 경력증명서 미제출 또는 미비시 경력 불인정

-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 등을 증빙하기 위하여 업무분장표, 당시 채용계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가능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가능

※ (보완서류)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 필수제출

- \* 필요한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4.11.6.)를 기준으로 하며,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전임근무의 경우 전부,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

#### 다.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2024.10.14.) 기준]

우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분야 근무경력(응시자격요건 충족이후, 1년이상 관련경력 연차별 차등 배점)</li> <li>○ 관련학과 학위 소지자(학사 이상 학위별 차등 배점)</li> <li>※ 관련전공은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전공) 법학, 경영학, 행정학, 사회복지학, 노동(노사)관련학</li> </ul> </li> </ul>
------	--

### 5 시험 방법

#### 【서류전형, 면접시험 순으로 실시】

#####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인 경우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소극적 전형)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인 경우
  - 응시자격에 적합한 자로서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5배수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5순위 동점자 발생으로 5순위까지 인원이 5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 합격 가능) (적극적 전형)

▶ (서류전형 기준) 관련분야 근무경력, 학위,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나. 2차 시험: 면접시험

- (방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4개 분야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4개 분야 평정요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1. 소통·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2. 헌신·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열정적인 태도
3. 창의·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4. 윤리·책임: 윤리의식과 책임성 등

- (합격자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 ‘상’, ‘중’, ‘하’의 개수를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4. 10. 4.(금) ~10. 14.(월)	'24. 10. 7.(월) ~10. 14.(월)	'24. 11. 1.(금)	'24. 11. 6.(수)	'24. 11. 20.(수)

- 본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별도로 개별 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통계청 홈페이지, 나라일터에 게재 예정

##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4. 10. 7.(월) ~ 10. 14.(월) 9:00 ~ 18:00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 응시원서는 붙임3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
- 등기우편 접수 주소 : (우)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통계청 3동 13층 운영지원과 인사팀 채용담당 / 문의전화 : 042-481-2007
  - ※ 응시원서 접수 시 봉투 겉면에 ‘**통계청 공무원(일반임기제) 응시원서 재증**’ 기재
  -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 정부수입인지(7,000원, 전자수입인지 출력물 가능)를 첨부하여야만 접수처리 완료됨
    - 수입인지를 부착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접수불가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문자메시지 등으로 개별 통보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나. 제출서류 ☞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응시원서 1부	○ 별지서식 제1호
	이력서 1부	○ 별지서식 제2호
	자기소개서 1부	○ 별지서식 제3호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지서식 제4호
	자격증(공인노무사) 사본 1부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5호
	근무경력 현황 1부	○ 별지서식 제6호
	경력(재직) 증명서 1부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 별지서식 제7호
	주민등록초본 1부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사본 1부	○ 별지서식 제8호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 4대 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및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 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

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 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4. 11. 28. ~ '24. 12. 27.

##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4. 12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2년(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가능)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연봉 상·하한액]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 6호	76,868천원	38,729천원

※ 연봉한계액은 '24년 보수규정에 따른 금액이며 기타 수당 별도 지급 (별표33)

※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가능. 단, 동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 9 안내 및 참고사항

-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또는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 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http://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사항: 통계청 운영지원과 인사팀(042-481-2007)
  - 직무관련 사항: 통계청 운영지원과 노사팀(042-481-2049)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제14925호)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2329호)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영구 임용결격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4.5.31.을 기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181(2022.11.24.), 2020헌마1605-2022헌마1276(병합) (2023.6.29.))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부입법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인바, 이에 따르면 동법 개정 이후 개정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임용될 수 없고, 임용되었더라도 개정법 시행일에 퇴직하게 됩니다. 정부입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http://opinion.lawmaking.go.kr))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료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붙임 2

##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노무	행정주사 (일반임기제)	1명	통계청 운영지원과 (대전)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사협력 및 근로자 인사노무관리 업무</li> <li>○ 단체협약 교섭 및 노사협의회 실무 업무</li> <li>○ 근로자 관련 자체 규정 및 업무편람 제·개정</li> <li>○ 상시 노사협력 업무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한 노무관련 교육·자문 등(유권 해석, 소송지원 등)</li> </ul>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공통 역량)</b>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 마인드(공복의식)</li> <li>○ <b>(직급별 역량)</b> 긍정성,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li> <li>○ <b>(직렬별 역량)</b> 분석력, 집행관리능력, 조정능력, 전문성, 대인관계</li> </ul>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조와의 교섭 등에 따른 실무 지식.경험 등</li> </ul> </li> <li>○ 비공무원 노무.행정관리 경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노무관리 지식.경험 등</li> </ul> </li> <li>○ 노동관계법령, 행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소양</li> </ul>		
응시 자격요건	자격증 및 근무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b>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 경력자</b></li> </ul> <p style="margin-left: 20px;">* 관련 분야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경력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경력 등 노무관련 업무</p>	
우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시자격요건 충족이후 1년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연차별 우대)</li> <li>○ 관련학과(법학, 행정, 경영, 사회복지학, 노동·노사)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li> </ul>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우대요건 및 가산점"은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 작성목록(총괄표)

구 분	별지서식 (필수여부)	내 용	제출여부
1. 응시원서 1부	제1호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지서식 제1호 작성</li> <li>○ 응시수수료: 7,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li> <li>※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li> </ul> </li> </ul>	<input type="checkbox"/> 제출
2. 이력서 1부	제2호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지서식 제2호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li> </ul> </li> </ul>	<input type="checkbox"/> 제출
3. 자기소개서 1부	제3호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지서식 제3호 작성 (A4 2매 이내로 작성)</li> </ul>	<input type="checkbox"/> 제출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제4호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지서식 제4호 작성 (A4 2매 이내로 작성)</li> </ul>	<input type="checkbox"/> 제출
5. 공인노무사 자격증 사본 1부	(필수)		<input type="checkbox"/> 제출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제5호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지서식 제5호 작성 (자필 서명 필수)</li> </ul>	<input type="checkbox"/> 제출
7. 근무경력 현황 1부	제6호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지서식 제6호 작성</li> </ul>	<input type="checkbox"/> 제출
8. 경력(재직) 증명서 1부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li> <li>○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li> <li>○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li> <li>○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li> <li>○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li> <li>※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li> <li>※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li> </ul>	<input type="checkbox"/> 제출

구 분	별지서식 (필수여부)	내 용	제출여부
9. 개인정보제공· 이용 동의서 1부	제7호 (필수)	○ 별지서식 제7호 작성 (자필 서명 필수)	<input type="checkbox"/> 제출
10. 주민등록초본 1부	(필수)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input type="checkbox"/> 제출
11.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학위증) 사본 1부	제8호 (해당자)	○ 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 <별지서식 제8호> -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이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input type="checkbox"/> 제출
12.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해당자)	○ 해당자에 한함 ※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중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증빙 용도 제출	<input type="checkbox"/> 제출

\* 제출서류에 대하여 '제출여부'란에 "✓"표시 후 함께 제출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사용금지)**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별지서식 제1호>

(앞 면)

# 응시원서 (원본)

통계청장 귀하

본인은 통계청 일반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00년 월 일

응시원서(원본)			
응시직급 / 분야		행정주사(일반임기제) / 노무	
응시자격증		공인노무사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소	(우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행정주사:7천원)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응시표 ( )시험			
응시직급 및 분야			
응시자격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성명	(한글) (한자)

### 주의사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통계청 운영지원과에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뒷 면)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 『응시원서』 는 아래의 《작성요령》 에 따라 작성한다.

### ◆ 작성요령

- ① 응시직급 / 분야 : 행정주사(일반임기제) / 노무
  - ② 응시자격증 : 공인노무사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④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 ⑥ 정부수입인지 :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부착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별지서식 제2호>

# 이 력 서

## 1.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노무	응시 직급	행정주사 (일반임기제)	성명	
----------	----------	----------	----	----------	-----------------	----	--

## 2. 응시자격

자격 증	자격증명	자격증번호	자격증 취득일	자격 검정기관	
	공인노무사				
경 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 (○○과)	16.1.1 ~ 17.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6.5.1~12.31.(질병휴직)	팀장 (5급)		전임 /비전임 (주 00시간 근무)

## 3. 우대요건

경 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 (○○과)	18.1.1 ~ 20.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7.5.1~18.1.1.(육아휴직)	과장 (4급)		전임/비전임 (주 00시간 근무)
학 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 우대사항란의 경력은 응시자격으로 제출한 경력 외 별도경력만 작성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 (인)

※ 경력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행추가 또는 별지이용 가능

※ 경력 기재 시 반드시 연월일을 기재

#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 공통사항 】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② 응시분야 : 노무
- ③ 응시직급 : 행정주사(일반임기제)

【 응시자격 】 : 해당사항에 한하여 작성

##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기재(공인노무사)

자격증명·자격증 취득예정일·자격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경력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3년의 경력이 있을 때,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1년의 경력은 '나. 응시자격'의 경력란에,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2년의 경력은 '다. 우대사항'의 경력란에 기재)

- ① 관련분야(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경력,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경력) 근무경력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 ② 관련 경력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부터 기재)
  - 근무기관 : 기관명과 부서명 모두 작성
  - 근무기간(시작일, 종료일), 근무처는 경력 증빙서류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근무일수 : 근무종료일을 포함한 재직기간을 년, 월, 일로 작성
    -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 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를 기재
    - ※ (민간) 과장, 팀장, 대리 등 직위 (공무원) 6급, 7급 등 직급
  - 근무형태 : 전임(주40시간 기준), 비전임[시간제(주당 근무시간 표시) 등]로 구분  
[예. 시간제(주20시간)]
  - 담당업무 : 실제로 수행한 업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
    - ※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상에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우대요건 】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경력 외 별도경력을 기재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
  -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경력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

**학위**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만 기재

- ① 해당자에 한하여 전공·취득(예정)일·학위종류를 반드시 기재하고 학사-석사-박사 순으로 작성(학교명은 기재하지 않음)
    - ※ (관련전공) 법학, 행정학, 경영학, 사회복지학, 노동(노사)관련학
    - ※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취득한 학위만 인정
  - ② 석·박사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및 논문표지, 제목, 발표자, 지도교수 및 논문요약이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제출 필수
- ※ 이력서에 기재된 모든 실적은 증빙서류로 입증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
  - ※ 기재사항이 많은 경우, 글씨크기 등은 작성자가 적절히 조절하여 워드프로 세서 혹은 한글프로그램으로 여러장 작성

##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직급 / 분야	행정주사(일반임기제) / 노무
-----	--	------	----------	-----------	------------------

### ◎ 자기소개서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 작성요령

1. 자기소개서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직무분야에서의 주요 실적 및 성공사례, 직장구성원으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특기사항,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2. 휴면명조 14p 가는 글씨, 줄간격 160mm로 작성(A4용지 2매 이내 분량)  
용지 좌우 여백은 각각 20mm, 상하 여백은 각각 15mm, 머리말 및 꼬리말은 각각 10mm 로 작성

## 직무수행 계획서

성명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직급 / 분야	행정주사(일반임기제) / 노무
----	--	------	----------	-----------	------------------

### ◎ 직무수행계획서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작성요령(시험공고문에 명시된 담당예정 업무와 연계하여 작성)

1.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분야 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기술
  - ① 직무에 대한 이해, 소견 및 응시 취지
  - ②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 ③ 구체적인 실천방안
2.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폰트는 휴먼명조, 글씨크기 13, 줄 간격 160mm, 글자색 : 검정색)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통계청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

통계청장 귀하

<별지서식 제6호>

## 근 무 경 력

근 무 기 관 (부서포함)	근무기간	근무월일수	직위(급)	관리자 경력 여부	담당업무 및 주요실적	근무형태 (근무시간)
1. 00기업 (전략기획 팀)	20XX.X.X ~ 20XX.X.XX	00개월00일	대리		○ OECD 국가별 수출입통계분 석 ○	상근 (주40시간)
	20XX.X.X ~ 20XX.X.XX	00개월00일	과장	○	○ ○	비상근 (주20시간)
2. 00부 (정보화정책 팀)	20XX.X.X ~ 20XX.X.XX	00개월00일	8급		○ ○	시간제 (주20시간)
<b>총 근무경력</b>		00개월00일				

**【작성요령】**

-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응시자격 및 우대요건의 경력 모두 기재)
- ② 근무처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할 것
- ③ 근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예시) 1년 2월 10일 →14개월 10일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④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⑤ 담당업무 및 주요실적은 요약하여 80자 이내로 간략하면서 구체적으로 기재
- ⑥ 근무형태는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 (예시) 전임(주40시간), 비전임(시간제/주20시간), 비전임(프리랜서)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병역사항,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 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

통계청장 귀하

## 학위논문요약서(석사.박사)

성명	직무분야	응시직급

학위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논문제목<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한글명 :</li><li>■ 영문명 :</li></ul></li><li>○ 심사 년월일 :</li><li>○ 지도교수 :</li></ul>
------	---

### 주요내용 요약

#### I. 연구목적

1.
  - 가.
    - 1)
      - 가)
        - (1)
          - (가)

#### II. 연구내용

#### III. 연구결과의 활용도(구체적으로)

본 논문요약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2024. . .

응시자 : (인)

※ 박사 및 석사 학위 건별로 작성 / 주요내용 요약은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논문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